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 실시 및 정신건강 전문인력 지원 >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77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신 문 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 실시 및 정신건강 전문인력 지원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영석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4. 30.
3. 회 부 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우울·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1.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및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 실시 및 정신건강 전문인력 지원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지원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4(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2.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 및 예방 3.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4. 또래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5. 그 밖에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① ~ ③ (생략)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조기발견·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학교를 순회하며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 설>	⑥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업무 범위 및 운영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학생의 우울·불안, 외로움, 자해·자살 시도 등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및 조기개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학생 상담 현황을 보더라도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진로 문제가 주요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 2024년 위(Wee) 센터 상담실적 현황 >

(단위: 건)

상담분야	정신건강	정보제공	대인관계	학업/진로	일탈/비행	성격	기타	계
건	142,682	68,466	63,478	59,856	58,997	38,256	49,192	480,927
비중(%)	29.7	14.2	13.2	12.4	12.3	8.0	10.2	100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보건 영역에서 정신건강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책무성과 우선순위가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됨. 나아가 교육청과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고위험 학생의 조기 발견·의뢰·사후관리 연계가 강화될 경우, 학생 자해·자살 등 위기 상황의 예방과 학교폭력·학업중단 등 연쇄적인 부정적 결과를 줄이는 데도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지원체계가 현행 제도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

· 도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 이들은 위기학생 상담, 심리·정서 지원, 보호자 및 관계기관 연계 등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업무 범위 역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예방, 조기발견, 상담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제도와 기능상 중첩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새로운 지원체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상담인력과의 역할 분담, 적용 대상, 업무 범위 및 협업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학생 대상 지원업무에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간호사, 임상심리사 외에 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이라는 요건만으로는 실제 수행 업무의 내용과 전문성 수준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컨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행정·홍보·사례관리 지원 등 간접업무 중심의 경력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직접 실무경력이 있더라도 성인이나 노인 등을 주된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학교생활,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 학교부적응 등 학생 특유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입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일정한 수련과 자격과정을 전제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력인 반면, 일반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심화된 임상훈련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자격기준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별도의 제정법안과의 체계 정합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학생 마음건강 관련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으며, 최근 발의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7285호)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조문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입법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별도 제정법이 마련될 경우 유사·중복 규정이 병존하게 되어 법체계의 복잡성이 커질 우려도 있음.

따라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중장기적으로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계류 중인 제정법안의 심사 경과와 입법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형식 및 규율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안 제9조의4 관련 >
○ 교육부: 신중검토 - 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 우리부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돌봄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내 사회정서교육을 도입하여 실시 중('25.~) - 다만, 현재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바, 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에 관한 내용을 제정법안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의 일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 학생의 정신건강 교육은 「학교보건법」의 의료적 목적보다는 ‘교육적·예방적’ 목적으로, 「학교보건법」보다는 별도의 법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안 제15조 관련 >
○ 교육부: 신중검토 -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지정·운영을 통해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법 체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전문인력 관련 사항도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제정법안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에서 전문인력의 역할로 제시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발견·상담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와 중복되므로,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의 역할을 다르게 정립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시·도교육청은 정신과 전문의 등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중
○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및 기존의 학생 심리·정서 지원 체계(Wee센터 등) 우선 활용 필요
○ 보건복지부: 일부수정 -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경우 인력의 전문성 편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정신건강전문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한정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